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6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의자 : 정태호 · 한병도 · 김태년

이학영 · 이수진 · 백혜련

복기왕 · 박민규 · 박홍근

조정식 · 맹성규 · 염태영

최기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따라 낮은 수입 대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단서 중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를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으로,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으로 한다.

제2장 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 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계좌 운용·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를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에”를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비과세) ① · ② (생략)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신 설>

## ④ ~ ⑥ (생 략)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  
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

비과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  
-----.

##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 례) -----

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 략)  
<신 설>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

1. · 2.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  
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 세표준  
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  
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  
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  
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

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원 600만원 이하 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  
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 관리, 계좌  
운용 · 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  
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



<p>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에 따라 계산한다.</p> <p>② ~ ⑤ (생 략)</p>	----- ----- ----- ----- ----- ----- ----- ----- ----- ----- -----.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